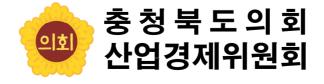
2024. 7. 22.(월) 제419회 임시회

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



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637 2024. 7. 22.(월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제419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
(2024년 7월 15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두환)

가. 제안이유

○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과 관련하여 조성하는 당해 펀드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O 출자 목적
 - 바이오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바이오 창업기업 모험자금 확충으로 충북도내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바이오 기업의 전략적 성장 지원
- O 출자 근거
 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육성 계획의 추진 및 지원)
-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 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- O 출자 내역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펀드 출자
 - ① 현대-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1호 (바이오 분야)
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㈜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-현대기술투자㈜
 - 유한책임조합원 :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(특별조합원), 충청북도, ㈜홈앤쇼핑,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, 농업회사법인 우포의아침㈜, 농업회사법인 셀바이오랩㈜
 - **존속기간** : 2024년 ~ 2032년(8년, 4년 투자 4년 회수)
 - 펀드규모: 300억원
 - · 모태펀드(농림부) 150, <u>충청북도 20</u>, ㈜홈앤쇼핑 20, 농업회사법인 우포의아침㈜ 5, 농업회사법인 셀바이오랩㈜ 5,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 30, 현대기술투자㈜ 50 ㈜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20
 - 투자대상 : 레드바이오, 바이오헬스, 그린바이오 분야 등의 창업기업
 - 도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 3배(6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

O 기대 효과

- 바이오 분야 각종 특구 지정,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우리도 바이오산업 육성방향에 맞춘 전용펀드 운영으로,
- 향후 IPO 및 기술판매(라이센싱) 등 높은 성장 가능성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에 확보,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창출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 - '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'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을 위해서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- O '현대-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l호'는 도 주력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펀드로 바이오 기업의 전략적 성장 지원을 위해 출자·조성하며, 모태펀드의 출자금이 50%를 차지하는 정부 정책 주도 펀드임
- 충북도에서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, 레드바이오, 바이오헬스, 그린 바이오 분야 등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 3배(60억)이상을 도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조합을 선정하였음
- 또한 본 출자계획안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 및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1항의 법률 및 절차적 근거를 충족함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, 이스라엘·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정 및 고금리·고물가·고환율의 3高 현상 심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내 유망 바이오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지원책으로 마련된 본 출자계획안은 향후 도내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동 계획안을 승인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임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- 5. 토 론 요 지: 없 음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

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

의 안 번 호 637

제출연월일 : 2024년 7월 3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과 관련하여 조성하는 당해 펀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 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출자목적
- 바이오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바이오 창업기업 모험자금 확충으로 충 북도내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바이오 기업의 전략적 성장 지원
- 출자근거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 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- 출자방식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
- 기대효과
- 바이오 분야 각종 특구 지정,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우리도 바이오산업 육성방향에 맞춘 전용펀드 운영으로,
- 향후 IPO 및 기술판매(라이센싱) 등 높은 성장 가능성 보유한 유망 스타 트업을 조기에 확보,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창출

3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□ 출자 심의요구서

주관보서	경제기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 주무관	전화
구근쿠^ 	혁신창업팀	이혜란	이나겸	천영혜	220-3232

^ 1업명	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					
출자대상	① 현대-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1호 (바이오 분야)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: ㈜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-현대기술투자㈜ - 유한책임조합원: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(특별조합원), 충청북도, ㈜홈앤쇼핑,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, 농업회사법인 우포의아침㈜, 농업회사법인 셀바이오랩㈜ - 존속기간: 2024년 ~ 2032년(8년, 4년 투자 4년 회수) - 펀드규모: 300억원 · 모태펀드(농림부) 150, 충청북도 20, ㈜홈앤쇼핑 20, 농업회사법인 우포의아침㈜ 5, 농업회사법인 셀바이오랩㈜ 5,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 30, 현대기술투자㈜ 50 ㈜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20 - 투자대상: 레드바이오, 바이오헬스, 그린바이오 분야 등의 창업기업 - 도 투자조건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 3배(6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					
	○ <u>출자 예정금액 : 2,000백만원(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)</u> ○ 출자내용					
출 자					(단원	위 : 백만원)
사 업 비	구 분	총 계	'24년	'25년	'26년	'27년
	총 계	20	4	6	8	2
	현대-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1호	20	4	6	8	2

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충북도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 분야의 유망한 바이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펀드 투자를 통한 딥테크 기술창업 지원 활성화 및 바이오 경쟁력 강화 출 7 필 요 성 ○ 도내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충북도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주력산업 분야(바이오) 유니콘 기업* 육성 발판 마련 * 기업가치 1조원 이상, 창업 업력 10년 이내의 비상장 스타트업 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1호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근거법령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 1. 벤처투자조합 2. 모태조합 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현대-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는 농식품 및 바이오 분야 등 특수목적 투자를 조건으로 결성된 펀드로, 충북도에서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투자조합임 - 충북도 투자조건으로 출자액의 3배 이상 도내 투자를 제안하였으며. 레드바이오, 바이오헬스, 그린바이오 분야 등의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로 지도감독 충북도 전략산업 육성방향에 부합 부서일견 ○ 바이오 분야의 혁신클러스터 기능 강화에 따라, 도내 유망 바이오 (총 평)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 마중물 역할이 될 모험자금 확충이 시급하여 전용 펀드 결성 타당 ○ 창업기업을 위한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→ 성장 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첨부자료 2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\square - \bigcirc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: 해당없음

[2] 출자금 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('23년),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('23년), k-바이오 스퀘어 조성계획 발표('23년) 등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.
- 충북도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 마중물이 될 모험자금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, 이에 부응하는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이 필요
- 결성 예정인 바이오 펀드에 대해 도 출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2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(단위: 억원, %)

③ 펀드 출자금 검토

○ 현대-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 1호

	출자자	출자액	출자비율	
	합 계	300	100	
LP(출자자)	충청북도	20	6.7%	
	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	150	50%	
	홈앤쇼핑	20	6.7%	
	농업회사법인 우포의아침	5	1.7%	
	농업회사법인 셀바이오랩	5	1.7%	
	전북 혁신성공벤처펀드	30	10%	
GP(공동 운용사)	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	20	6.7%	
	현대기술투자	50	16.7%	

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※ 운용사 출자: 업무집행조합원(GP)은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 의무

※ 근거법령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
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□-② 출자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	그ㅂ	출자	2,000백만원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丁正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 내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바이오 분야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유니콘 기업 육성 발판 마련
- 충북도내 바이오 특화 클러스터의 역할 강화 및 도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금 확충

□ 출자개요

- 현대-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1호
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: ㈜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-현대기술투자㈜
- 유한책임조합원 :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, 충청북도, ㈜홈앤쇼핑, 농업회사법인 우포의아침㈜, 농업회사법인 셀바이오랩㈜,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
- 존속기간 : 2024년 ~ 2032년(8년, 4년 투자 4년 회수)
- 펀드규모: 300억원
 - 모태펀드(농림부) 150, <u>충청북도 20</u>, 홈앤쇼핑 20, 농업회사법인 우포의아침 5, 농업회사법인 셀바이오랩 5,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30, 현대기술투자 50,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20,
- 투자대상 : 레드바이오, 바이오헬스, 그린바이오 분야 등의 창업기업
- 도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 3배(6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

□ 산출기초

- 조합원 출자약정 : 300억원(모태펀드 150, 도 20, 기타 130)
- 도 출자계획 : 20억원('24년 4억, '25년 6억, '26년 8억, '27년 2억) 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【 펀드별 출자약정 내역】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모태펀드 (국비)	도비	기타
현대-파이오니어 농식품펀드1호	300	150	20	130

□ 기대효과

- 각종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지정 및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전략적 산업육성에 따른 바이오 전용 펀드 운영으로,
- 향후 IPO 및 기술판매(라이센싱)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에 확보·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여

□ 출자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금번 조성하는 바이오 펀드는 도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창업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조성한 펀드로, 미 승인시 펀드 결성 무산 및 향후 충북도의 펀드 결성·참여에 어려움 발생 예상
- 도내 창업·벤처기업들이 자금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소멸 및 창업생태계 구축 지연

관 련 법 령

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제1 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- 1. 벤처투자조합
- 2. 모태조합
- 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4. 한국벤처투자조합

」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